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97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 : 홍기원 · 한민수 · 허 영

신영대 · 윤종군 · 강선우

김교흥 · 김영배 · 이정문

임오경 • 윤호중 • 조승래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국회 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 등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면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구획정을 위한 주요 기준이 되는 시·도별 의원정수의 결정 주체와 기한 등이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거구획정을 앞둔 시점에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진행되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출범 후에도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기준 확정을 요구한 채응답을 장기간 기다리는 등 신속한 선거구획정 절차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됨. 또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총선마다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 및 후보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기준 주체를 국회로 명시하고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 이후 변경되는 선거제도는 다음번 획정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획정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획정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이어, 획정위 설치일을 선거일 18개월 전에서 24개월 전으로,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을 선거일 13개월 전에서 15개월 전으로,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시한을 선거일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획정위와 국회에 선거구획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 및 협의 기한을 부여함. 또한,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제출 요구를 선거일 7개월 전까지로 한정하여 선거구획정 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전 18개월부터'에서 '선거일 전 24개월부터'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 나. 국회의장은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제11항 신설).
- 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을 '선

거일 전 13개월까지'에서 '선거일 전 15개월까지'로 변경함(안 제24 조제12항).

- 라.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 전 18개월 현재 이 법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제20조에 따른 선거구와 제21조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및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말함)를 기준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국회가 선거일전 18개월 이후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한 때는 변경 당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그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24조제13항 신설).
- 마.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기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선거일 전 7개월이경과하면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함(안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 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조사 시점 기준을 '선거일 전 15개월'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로 변경함(안 제25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선거일 전 18개월부터"를 "선거일 전 24개월부터"로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중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를 "선거일 전 15개월까지"로 한다.

- ① 국회의장은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장이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 ③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 전 18개월 현재 이 법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제20조에 따른 선거구와 제21조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및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후단에서 또한 같다)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거일 전 18개월 이후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 당시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는 그 효력이 없다.

제24조의2제1항 중 "선거일 전 1년까지"를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7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에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15개월이"를 "18개월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	ই) ①		
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u>선거일</u>	<u>선거일</u>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	<u>전 24개월부터</u>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			
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			
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			
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			
치・운영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① 국회의장은 선거일 전 18개		
	월까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		
	원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u>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u>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의장이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아		
	<u>니한 때에는 직전 임기만료에</u>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		
	정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u>12</u>		
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			

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 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 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신 설>

<u>⑩</u> ~ <u>⑭</u> (생 략)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4조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①

선거일 전 15개월
<u>까지</u>
③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 전
18개월 현재 이 법에 따른 지
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제20조
에 따른 선거구와 제21조에 따
른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및 하
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
할 국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사
항을 말하며, 후단에서 또한 같
다)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
다. 이 경우 국회가 선거일 전
18개월 이후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한 때에는 변
경 당시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에는 그 효력이 없다.
<u>(4)</u> ~ <u>(6)</u> (현행 제12항부터 제
14항까지와 같음)
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u>선거일 전 1년까지</u> 확정하여야 <u>선거일 전 6개월까지</u>------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④ ~ ⑥ (생 략)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
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 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 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 2. (생략)
- ②·③ (생 략)

<u>.</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7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국회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할
<u>수 없다.</u>
$\underline{5} \sim \underline{7}$ (현행 제4항부터 제 6
항까지와 같음)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1
18
 개월이
 이 (청체코 가이)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